

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, 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이 동 현 위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본 조례안의 제2조3호 에서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정의를
“청소년수련활동”, “청소년교류활동”, “청소년 문화활동” 등을 제공
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“청소년 교류활동”은 제2조4호에 상위법인 청소년활동
진흥법의 내용으로 정의하여 법적 해석의 논란이 없으나 “청
소년 수련활동”, “청소년 문화활동”은 정의되어 있지 않아 법
적해석의 논란이 있습니다.

-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2조5호, 제2조6호를 각각 신설하여 “청소년수련활동”, “청소년문화활동”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.

-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시설의 정의를 정립하고 “청소년 교류활동”뿐만 아니라 “청소년 수련활동”, “청소년 문화활동”을 정의하여 법적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하려 합니다.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천만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